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안전점검 등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 변경(안 제9조)

복수 차장이 있는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소관 차장 변경* 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현행 ‘제2차장’을 제1호**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으로 변경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6.27.)에 따라 국무1차장 소관으로 변경됨

**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단 변경(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9.4.시행)에 따라 중앙민관 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실·국장 변경

다. 관계 기관의 재난 사전방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근거 명문화
(안 제29조의2)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등

마. 국가안보 관련 긴급안전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8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보와 관
 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이 참여해서 보다 실효적인 점검을 지원하도록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국가안보 관련 정부합동 안전 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

전문적·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안전정책실장”을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난관리실장”을 “자연재난실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재난협력실장”을 “사회재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3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점검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 성 · 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 성 · 운영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 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 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u>	2. <u>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 장하는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금융위원회 부위 원장</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 ③ (생 략)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
1. 당연직 위원	1. -----
가. 행정안전부 <u>안전정책실장</u>	가. ----- <u>안전예방정책실 장</u>
나. 행정안전부 <u>재난관리실장</u>	나. ----- <u>자연재난실장</u>
다. 행정안전부 <u>재난협력실장</u>	다. ----- <u>사회재난실장</u>

<u><신 설></u> 2. (생 략) ⑤ · ⑥ (생 략)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u>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 국장</u>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	--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u>구성한다</u>. ② ~ ⑦ (생략)	같음)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 ----- ----- ----- ----- ----- ----- <u>구성</u> <u>하며, 점검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